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08 발의연월일: 2021. 12. 20.

발 의 자:허 영·강준현·김윤덕

김주영 • 박상혁 • 박홍근

소병훈 · 위성곤 · 유정주

윤건영 • 이개호 • 천준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.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 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.

실제, 2020년 6~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하였으며, 집중호우로 38개 시·군·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함.

이에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·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 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 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 0조 및 제24조).

법률 제 호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둘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"으로, "위한 치수계획"을 "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"으로,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"를 "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1. 둘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
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으로서 택지개발 등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하천유역에 상당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하천유역
-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

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 제24조제1항 중 "재평가"를 "주기적으로 재평가"로, "활용할 수 있다"를 "활용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·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·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) ①	제20조(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) ①
환경부장관은 <u>둘 이상의 시·군·</u>	<u>다음 각 호의</u>
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
<u>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</u> 에	<u>역</u>
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	
피해 최소화 등을 <u>위한 치수계</u>	<u>위한 10년 단</u>
<u>획</u> (이하 "특정하천유역치수계	위의 치수계획
획"이라 한다)을 <u>수립·시행할</u>	<u>수립·시행하</u>
<u>수 있다</u> .	<u>여야 한다</u> .
<u><신 설></u>	1. 둘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를
	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
	<u>흐르는 하천유역</u>
<u><신 설></u>	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	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
	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
	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
	으로서 택지개발 등 도시화의
	진행에 따라 하천유역에 상당
	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
	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
	방지 대책이 필요한 하천유역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

- ③ (생 략)
- ④ 제1항부터 <u>제3항</u>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 역치수계획의 수립·변경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24조(수자원시설의 재평가) ① 저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 수공급능력, 홍수조절능력 등을 <u>재평가</u>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<u>활용할 수</u> 있다.
 - ②·③ (생 략)

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
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
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
<u>야 한다.</u>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⑤</u> 제4항
제24조(수자원시설의 재평가) ①
주기적으로 재평가
<u>활용하여야</u>
한다.
②・③ (현행과 같음)